

중소기업관계법 개정(안)

1. 개 요

- 상공자원부는 국제화·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자율과 경쟁기반위에서 성장·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관계법을 금년 하반기중에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8개법률을 5개법률로 단순화하기로 하고, 이에 의거 '93. 12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외한 현행 7개 법률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.
- 상공자원부는 개정시안을 '94. 5월중 공청회에 제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2. 배 경

-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관계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,
 - 중소기업관계법 대부분이 제·개정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대내외 환경변화, 특히 세계

무역기구(WHO)체제의 출범에 대한 대처능력조성에 미흡하며,

- '70년대 중반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법들이 제각기 입법취지에 따라 제정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중복규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,
- 앞으로의 환경변화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개편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, 새로운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'94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되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계속 필요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.

3. 개정안 요지

가. 개정체계안

- 중소기업기본법을 정점으로 한 다원화한 법

률체계의 근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나, 개별법의 수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 현행 8개법률에서 5개법률로 단순화하였다.

- 즉,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을 총괄하는 헌장적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기본법을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, 중소기업진흥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, 중소기업과대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로 개편하고,
- 이들 실체법들은 각각 중소기업의 창업, 창업후 육성·자조(自助)조직, 대기업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다.

- 환경문제, 물류현대화등 신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,
- 국제규범과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리하였다.

다. 개별법의 주요개정안

중소기업기본법

- 중소기업자의 범위조정
 - 종래의 양적 개념(상시종업원수, 자산총액 규모)외에 질적 개념(독립하여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)을 병행 적용
- 중소기업자의 규모별 구분폐지
 - 소기업자, 중기업자로 일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업규모별로 지원시책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시책 추진
- 중소기업자의 졸업제도 강화
 -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자 범위를 초과한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를 1회 적용으로 제한
- 중소기업 주간 제정
 - 매월 5월 두번째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제정

중소기업창업지원법

- 창업보육센터의 법적 제도화
 -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근거 동센터 사업자에 대한 세제·자금지원 규정 신설
-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
 - 창업과 관련된 일괄처리 인·허가 사항을 확대 (23개법 38개 인·허가 → 29개법 59개 인·허가)
- 현재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관련 사항을 창업지원법으로 일원화
 - 창업조성지원계획 수립등

현행	개편안
중소기업기본법	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	중소기업창업지원법
중소기업진흥법	중소기업진흥법
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	
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	
중소기업협동조합법	중소기업협동조합법
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	중소기업과대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중소기업사업조정법	

나. 개편원칙

- 중소기업관계법에 대한 금번 개편의 원칙은,
 -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가 정책대상이 되도록 중소기업자 범위를 조정하고,
 - 중소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,
 - 또한 복잡다기하고 기업규제적인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며,

중소기업진흥법

- 중소기업정책연구원의 설립·운용근거 규정 신설
 - 국내외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 조사,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,
 -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설립
- 중소기업 정보은행, 자동화센터의 설립 근거 규정 신설
 -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자동화의 보급·확산을 위하여 설립
- 신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규정
 - 중소기업제품 판로시책, 중소기업의 국제화 시책,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시책등
- 실효성이 없는 제도의 폐지
 -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지정 및 근대화계획의 수립·고시에 관한 규정등

중소기업과 대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법률

- 계열화의 실효성 제고
 - 계열화진흥기금 및 계열화진흥협회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
 - 2차 수급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 근거 신설
- 수급거래 공정화 촉진을 위한 법률 규정 일원화
 -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중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법률에서 후자의 관련규정을 준용
- 중소기업 사업활동기회의 실질적 보장
 - 사업조정제도의 민간자율조정 절차 및 조사 신청 근거의 신설
 - 사업조정기간의 연장(1년이내 → 3년이내)

전안

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안내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1종 및 2종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(공업진흥청고시 제92-254호, 개정 '92. 6. 4)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 전기용품 사후관리결과 일부 전기용품의 표시사항이 동 규정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표시위반사례 : - 제조년월일 미표시 - 옥내외용 구분 미표시
 - 정격소비전력 미표시 - 한글 미표기
 - 상 미표시 - 접지 미표시 등
 (정격전압110V초과제품)